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28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자산관리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10.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20. 2. 15.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1. 8. 11. 접수 제600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차전2295호 양수금 사건의 2014. 8. 29.자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20,116,816원 및 그 중 5,465,093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부친인 D은 2020. 2. 15. 사망하였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C, E, F, 피고 B, G, H, I이 있고, 망인의 배우자 J는 1990. 5. 16. 이미 사망하였다. 따라서 C을 비롯한 자녀들의 각 상속지분은 1/7이다(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다. 위 상속인들은 2021. 8. 10.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21. 8. 11. 접수 제6000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1/7)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포항시 남구 K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가 선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반증은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무여부를 알 수 없었고, C이 원고와 사이에 200만 원 정도로 합의를 보기위하여 접촉 중 변제방식을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최대한 일시불로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임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그러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C에게 자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별지